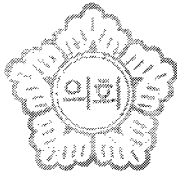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1회 제1차 정례회(2019. 6. 13.)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준호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67
----------	-------

2019. 6. 13.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나. 제 출 일 : 2019. 5. 27.(월)
- 다. 회 부 일 : 2019. 5. 29.(수)

2. 결산현황

- 가. 세입결산
 - 해당없음
- 나. 세출결산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3,957,111,000	3,957,111,000	3,449,764,280	478,592,320	12.09%
선진의회상 정립	1,690,710,000	1,690,710,000	1,376,430,009	285,525,591	16.88%
의정활동 지원	1,647,210,000	1,647,210,000	1,340,705,009	277,750,591	16.86%
의정활동 홍보	43,500,000	43,500,000	35,725,000	7,775,000	17.87%
행정운영경비	2,266,401,000	2,266,401,000	2,073,334,271	193,066,729	8.51%
인력운영비	2,057,030,000	2,057,030,000	1,956,949,090	100,080,910	4.86%
기본경비	209,371,000	209,371,000	116,385,181	92,985,819	44.41%

○ 현 황

- 예 산 액: 39억 5,711만 1천원 [예산현액: 39억 5,711만 1천원]
- 지 출 액: 34억 4,976만 4,280원
- 집행잔액: 4억 7,859만 2,320원 {불용률 12.09%(전년도: 5.3%)}

○ 집행잔액 구분

- 의정활동지원: 2억 7,775만 591원(불용률 16.86%)
- 의정활동홍보: 777만 5천원(불용률 17.87%)
- 인력운영비: 1억 8만 910원(불용률 4.86%)
- 기본경비: 9,298만 5,819원(불용률 44.41%)

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원인별 집행잔액			
	계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합 계	478,592,320	6,269,000	81,398,000	390,925,320
선진의회상 정립	285,525,591	6,145,000	81,398,000	197,982,591
의정활동 지원	277,750,591	5,245,000	79,898,000	192,607,591
의정활동 홍보	7,775,000	900,000	1,500,000	5,375,000
행정운영경비	193,066,729	124,000		192,942,729
인력운영비	100,080,910			100,080,910
기본경비	92,985,819	124,000		92,861,819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세출예산 집행잔액: 4억 7,859만 2,320원(불용률: 12.09%)]

1)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139만 8천원

(1) 의정활동지원: 7,989만 8천원

- (2) 의정활동홍보: 150만원
- 2) 예산절감(유보액): 626만 9천원
 - (1) 의정활동지원: 524만 5천원
 - (2) 의정활동홍보: 90만원
 - (3) 기본경비: 12만 4천원
- 3)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3억 9,092만 5,320원
 - (1) 의정활동지원: 1억 9,260만 7,591원
 - (2) 의정활동홍보: 537만 5천원
 - (3) 인력운영비: 1억 8만 910원
 - (4) 기본경비: 9,286만 1,819원

라.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공공운영비	42,114,000	26,779,970	15,334,030	36.41%
국내여비	6,880,000	3,736,000	3,144,000	45.70%
국제화여비	24,000,000	10,892,860	13,107,140	54.6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494,000	30,044,920	20,449,080	40.50%
의원국내여비	11,210,000	3,206,400	8,003,600	71.40%
의정운영공통경비	121,788,000	70,432,059	51,355,941	42.17%
의원역량개발비	16,000,000	12,280,000	3,720,000	23.25%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3,499,000	13,094,640	10,404,360	44.28%
의원상해부담금	39,600,000	0	39,600,000	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67,589,000	46,226,420	21,362,580	31.61%
도서구입비	4,000,000	1,672,950	2,327,050	58.18%
사무관리비	560,000	280,000	280,000	50.00%
의원국외여비	61,425,000	28,144,200	33,280,800	54.18%
사무관리비	78,460,000	53,353,110	25,106,890	32.00%
공공운영비	4,110,000	2,405,610	1,704,390	41.47%
국내여비	104,400,000	40,090,000	64,310,000	61.6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20,000	1,257,800	1,062,200	45.78%

다. 연도별 예산 집행액 및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	3,957,111	3,449,764	478,592	12.1%
2017	3,537,515	3,348,761	188,754	5.3%
2016	3,303,288	3,164,960	138,328	4.2%
2015	3,281,564	3,167,164	114,400	3.5%
2014	3,230,699	3,071,876	158,823	4.9%
2013	3,168,800	3,046,839	121,961	3.8%

※ 2018년 결산예산은 2017년도 대비 419,596천원(11.86%)이 증가됨.

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예산 이용·이체: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1건, 440,000원

- 사무국 인사발령에 따른 상위 직급 증가로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여 동일 단위사업내 보수를 직급보조비로 전용 사용

(단위 : 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	기타	인력운영비	보수	1,847,155,000	440,000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56,850,000		440,000

○ 예산 변경: 3건, 74,122,000원

(단위 : 원)

부문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입법 및 선거관리	의정공통업무지원 및의장단활동지원	공공운영비	59,784,000	17,670,000	
	의정공통업무지원 및의장단활동지원	사무관리비	63,965,000		17,670,000
입법 및 선거관리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0,000,000	3,500,000	
	의정활동지역신문 홍보	사무관리비	12,000,000		3,500,000
기타	인력운영비	보수	1,900,107,000	52,952,000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52,952,00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고문료 및 자문료 예산 집행 및 의원연구실 조성 사무용품으로 변경 사용
- 의정활동 홍보사업 중 홍보물 제작비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를 지역신문 홍보비 부족으로 변경 사용
-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 인력운영비 보수를 기타직보수로 변경 사용

3.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¹⁾ 등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및 건의(권고) 사항은 총 24건이나,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은 없음.

<표 1. 결산 검사위원 명단>

검사기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2019. 4. 9.~ 5. 8.	장덕준	이혜민	변인섭	심상철	최승열

다. 2018회계연도 결산 중 구의회사무국은 세입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라.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9억 5,711만 1,000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약 87.1%인 34억 4,976만 4,28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억 7,859만 2,320원임.

마.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 결과 불용비율은 12.1%로 전년도 불용비율 5.3%를 상회하고 있음.

1)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 및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난 사업 현황을 보면

1)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공공운영비): 15,334,030원

- 불용률: 36.41%

- 집행잔액 사유

-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절감
- 영상음향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절감

2)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국내여비): 3,144,000원

- 불용률: 45.70%

- 집행잔액 사유

- 의원 국내 의정연수, 비교시찰 수행 및 교육여비 잔액

3)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국제화여비): 13,107,140원

- 불용률: 54.61%

- 집행잔액 사유

- 의원 해외비교시찰 수행 후 잔액

4)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449,080원

- 불용률: 40.50%

- 집행잔액 사유

- 사무국 업무추진비 집행후 잔액
- 의원행사지원, 자매결연(석경산구)사업추진 집행후 잔액

5)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의원국내여비): 8,003,600원

- 불용률: 71.40%

- 집행잔액 사유

- 위원회별 교육, 워크샵 등 관외 출장시 경비 집행 잔액

6)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의원국민연금부담금): 10,404,360원

- 불용률: 44.28%

- 집행잔액 사유

- 60세 이상자 납부 면제(13명)

- 7)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의원상해부담금): 39,600,000원
 - 불용률: 100%
 - 집행잔액 사유: 미발생
- 8)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21,362,580원
 - 불용률: 31.61%
 - 집행잔액 사유
 · 의원 및 직원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 후 집행 잔액
- 9)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도서구입비): 2,327,050원
 - 불용률: 58.18%
 - 집행잔액 사유
 · 구매도서 42권으로 집행 저조
- 10) 국외 선진의회 연수(의원국외여비): 33,280,800원
 - 불용률: 54.18%
 - 집행잔액 사유
 · 의원해외비교시찰(일본) 집행후(의원 18명) 잔액
 ·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집행사유 미발생
- 11) 기본경비(사무관리비): 25,106,890원
 - 불용률: 32.00%
 - 집행잔액 사유
 · 직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집행후 잔액(편성20일)
- 12) 기본경비(공공운영비): 1,704,390원
 - 불용률: 41.47%
 - 집행잔액 사유
 · 케이블TV시청료, 사무실 환경정화 및 점검수수료 집행후 잔액
- 13) 기본경비(국내여비): 64,310,000원
 - 불용률: 61.60%
 - 집행잔액 사유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출장여비 집행후 잔액(편성20일)

14) 기본경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62,200원

- 불용률: 45.78%

- 집행잔액 사유

· 직원 생일 축하 문화상품권 및 직원 체련대회 실시 후 잔액

사. 상기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집행 결과 불용률이 다소 높은 수준임.

예산집행 잔액은 대부분 같은 사업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편임. 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 활동지원 저조 등의 사유로 판단됨.

하지만, 의정활동 적극지원을 위한 의원연구실 재배치 사업과 의정연수 및 지방비교, 해외비교 시찰시 수행 직원을 탄력적으로 축소 운영하는 효율성을 발휘하여 예산절감 성과를 다소 이룬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구 전체 평균 불용률(15%)²⁾과 연도별 의회사무국 불용률을 비교해 보면 의회사무국의 불용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면밀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또한, 매년 예산 대비 30%이상 미집행된 불용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연수 프로그램 참여, 의회 전문가 강사 초청 세미나, 타 지방의회와의 교류 활성화 등의 다각적인 의정 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한 복리후생과 민간위탁교육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의회 운영 전반에 전문성을 위한

2) 출처 : 2018 회계연도 마포구 결산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타 사항으로 의회 시설 규모에 맞는 시설비 집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